

2004년도 화순군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7(1일간)

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)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결산검사의 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

○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

다. 2004년도 결산규모

○ 세입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	예산현액	징수 결정액	수납액	미수납액	미수납처리	
						결손처분	이월
계		328,176,352	311,761,012	305,079,691	6,681,321	180,491	6,500,830
일반회계		281,342,059	286,509,255	281,068,850	5,440,405	180,491	5,259,914
특별회계		46,834,293	25,251,757	24,010,841	1,240,916	0	1,240,916

○ 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	예산현액	지출액	집행율	이월액	불용액
일반회계	281,342,059	165,810,856	58.9	101,718,565	13,812,638	
특별회계	46,834,293	16,341,449	34.9	28,698,636	1,794,208	

○ 이월사업비 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 속 비
계	130,417,201	107,651,571	7,861,448	14,904,182
일반회계	101,718,565	80,610,828	6,203,555	14,904,182
특별회계	28,698,636	27,040,743	1,657,893	0

○ 불용액 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원 인 별					
		예산집행 사유미발생	예산절감	예산집행 잔액	보조금 집행잔액	예비비	계 변경취소
계	15,606,846	7,290,398	5,223,403	2,390,688	515,474	152,889	33,994
일반회계	13,812,638	6,176,237	5,135,169	1,995,538	318,811	152,889	33,994
특별회계	1,794,208	1,114,161	88,234	395,150	196,663		

3. 검토결과(전문위원 문찬주)

-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·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,
 -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·세출 예산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,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 하였는가, 그리고 금후의 행.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,
 -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 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.
-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,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 봄.
-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95%이며,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.8%이지만 미수납액이 66억8,132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.1%이고 결손처분이 1억8,049만1천원임.

-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5.5%이며, 불용액이 156억684만6천원, 예산현액 대비 4.8%를 차지하고 있음.
-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1억7,623만7천원으로 44.7%이고, 특별회계는 11억1,416만1천원 62.1%로 가장 많았다. 이것은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됨.
-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위원회활동

가. 제1차 회의 (2005. 6. 20)

- 위원장, 간사 선출

나. 제2차 회의 (2005. 7. 7)

-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-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질의 답변

7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